2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O 제출일자 : 2021년 4월 2일

O 제 출 자 : 송영헌 의원, 김대현 의원, 김동식 의원, 박갑상 의원

박우근 의원, 이만규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윤기배 의원, 윤영애 의원

O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O 상정일자 :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년 4월 15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송영헌 의원)

- □ 제안이유
 - O 학생상담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학교 생활의 적응을 도와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O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O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 O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노인만)

○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상담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을 하는 데 기여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와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O 주요 내용으로는

- ▶ 안 제3조에서,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 안 제4조에서,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1. 추진 목표 및 방향
- 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 3. 학생상담 운영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 4.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안 제5조에서, 학생상담 운영지원위원회의 자문 역할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학생상담실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학생상담 담당자를 위한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8조에서,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실시와 정책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9조에서, 학생상담 업무와 관련한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를 규정함

O 검토 결과

- ▶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 상담활동 지원을 위한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위기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음
-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우울, 불안, 무력감이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학생의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학교 생활의 적응과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돕기 위해 시의 적절한 제정이라 판단됨
- ▶ **다만**, 학생상담 지원계획 수립 시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서 진일 보하여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심리 불안 해소

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급 학교 현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학생 상담 담당자 연수 및 학생 상담 실태 조사 시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학교에서 학생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Wee클래스가 1998년 부터 2012년까지 주로 설치되어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고, 당시 상담 중 비밀 보장을 위한 방음시설과 시설 조건에 대한 기준 없이 구축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시설 보완 시 상담실 환경 조성 기준설치 및 설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학교 폭력 대책으로 학생상담이 활성	○ 학생상담 지원계획은 연간 교육청업무
화 되어 있는데, 학생상담 지원계획과	계획 시 일괄 반영하며, 교사 연수는
상담교사 연수는 어떻게 이뤄지나?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본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함

5. 토론요지

O 없 음

- 6. 수정안요지
 - O 없 음
- 7. 심사결과
 - O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요지
 - O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O 없 음